

목포시의회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1. 개최일자: 1953(4288)년 4월 15일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참석의원:17명

朴贊圭, 金永完, 吳世一, 鄭應杓, 孫白洙, 明南喆, 金昌賢, 金子洪,
李福柱, 李在洪, 林一男, 金八用, 金三星, 金京炫, 李小圭, 金南鎭,
李文吉

2.불참의원:4명

金吉煥, 文宅鎬, 金慶禧, 陳福春

4. 개의선언

議長(오전 10시 20분)

5. 출석한 공무원

市長, 副市長, 總務課長, 財務課長, 産業課長, 社會課長,
建設課長, 戶兵課長

6. 보고사항:

※ 제35회 1차 회의록 낭독 통과

※ 오전 11시 30분 金京炫의원 참회

※ 제35회 2차 회의록 낭독 통과

※ 동정 운영에 대한 축조설명 보고

※ 준설선, 배선 및 상업은행 유치에 대한 민의원 金聲浩氏로부터의 서신
보고

※ 오전 11시 5분 副議長 李小圭 참회

※ 오전 11시 45분 李文吉의원 참회

◇孫白洙의원

- 목포항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준설선을 목포에 배선
되도록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공회의소, 시변영회 합동하여 건의문을 발송
할 것을 동의

◇林一男의원

- 건의문 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중앙에 교섭위원을 파견하여 운동을 전개할
것을 동의에 첨가
(동의집 전원 거수 찬동 가결)

※ 교육청 서무과장과 각 시의원 간에 특별 부과금 예산, 납기, 징수 및
CAC 구호물자 도입에 있어 질의 응답이 있었음

◇鄭應杓의원

- 특별 부과금 납기를 4개월 연장하여 8월 15일까지는 독촉장
을 발부치 않도록 목포 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3청)

◇李小圭의원

- 특별 부과금의 납기를 8월 15일까지와 12월 말일까지 양분
여 징수토록 하고 그 기간에는 독촉장을 발부 않도록 개의
재청 없어 폐기

◇孫白洙의원

- 동의에 참가

◇鄭應杓의원

- 특별 부과금 납기에 있어서 6월 29일까지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말고 6월 말일 부로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조월 수속을 그 익월에 받도록 하고 납기 연장에 있어서 교육감과 시장에게 교섭하기 위하여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장 및 각 분과위원장 5명으로 할 것을 긴급 동의에 수정

(재청, 3청)

(표결 결과 전원 찬동) 가결

※ 오후 1시 50분 李文吉의원 퇴장

7. 휴회선언:議長

(오후 1시 10분)

8. 속개선언:議長

(오후 1시 40분)

◇金三星의원

- 상업은행 유치에 있어서 사무 당국에서 상경하는 시의원이나 적의 한 편에 진정하는 것이 좋으니 건의할 것을 동의

- 표결 결과

전원 거수 찬동 가결

◇鄭應杓의원

- 춘궁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 대한 시민 생활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부의 안전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대 질문할 것을 긴급 동의

- 표결 결과

가 11표 가결

※ 동자치 행정을 위요코 다각도록 행정부대 질의가 있었음

◇金三星의원

- 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목포시민의 부담력이 과하므로 국세 및 국채 문제를 호소하기 위하여 당일 식을 7시부터 9시까지 종결하고 즉시 상광하여 진정할 것을 긴급 동의
(상광 의원은 시의원 전원)
(재청)

◇鄭應杓의원

- 동행정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과 위원 5명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동의
(재청)
 -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빈동, 부동 의원에서 지명할 것임표결 결과 전원 거수 찬동 가결

◇議長

- 위원으로서 鄭應杓, 金南鎭, 金永完, 金昌賢, 孫白洙 5명의 각 의원을 지명 하였음

◇金三星의원

- 긴급 동의에 대하여 표결
전원 거수 찬동 가결

※ 오후 3시 50분 明南喆의원 방청석에 휴회

◇李福柱의원

- 대행부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
(재청)

※ 오후 4시 1분 의장 사회를 부의장 李小圭와 교체

※ 오후 4시 2분 의원 착석

※ 오후 4시 5분 각 李福柱, 李在洪, 金三星의원 퇴장

◇鄭應杓의원

- 대 행정부 질의를 종결하고 부의안건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에 첨가
(재청)

- 표결 결과

전원 거수 찬동 가결

9. 부의안건:

※ 목포시 도로정비 조례 제정의 건

※ 행정부의 축조설명이 있었음

◇金南鎭의원

- 본건에 있어서 1, 2,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林一男의원

- 1독회를 끝마쳤으니 2독회로 들어갈 것을 개의
(재청)

◇金子洪의원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에 첨가

◇副議長

- 金南鎭의원 동의 표결 하겠음
가 8 가결

◇明南喆의원

- 공익 전당포 운영자금 기채의 건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4청)

6.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의원을 지명

10. 폐 회 식: 식순 생략

11. 폐회선언:副議長

(오후 5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1953년(4288)년 4월 19일

議長:朴 贊 圭

議員:金 八 用

” :金 南 鎭

作成者 書記:洪 南 植

제36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 속기록

◇議長

- 의원 제공께서는 오늘도 역시 건강하신 몸으로 이와 같이 다수 참석하여 주셔서 오늘 회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누구나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 이것으로써 13명 의원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개의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전차 회의록 낭독하여 주십시오.

◇書記

- 전차 회의록 낭독

※ 金京炫의원 입회

◇議長

- 교육청 서무과장 앉아 주십시오.
-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은 제35회 제1차 회의록입니다.
전번에 통과 하려다가 기록 내용에 있어 가지고 불비한 점이 있어 그것을 수정 결과 오늘 낭독한 것입니다.
-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하니까 통과 합니다.
- 그러면 제2차 회의록 낭독하여 주십시오.

◇書記

- 제2차 회의록 낭독

◇議長

-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하니까 통과 하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 보고 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書記

- 노무자 유가족에 대한 학비 면제 건의문 내용 보고가 있었음
다음 이어서 강진출신 민의원 金聲浩氏로부터 목포시장에게 보내온 1신, 2신
의 공한을 낭독 하였음
낭독 도중 朴贊圭 副議長 입장

◇議長

-다음 동행정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書記

-동행정에 대한 별지부표에 의해서 축조 설명이 있었음

◇議長

- 지금 보고 가운데 金聲浩의원께서 목포시장에게 보낸 서신은 준설선
을 미국에서 2척을 도입 하는데 그 두척 가운데서 한척이라는 것을 거취가
분명하지 못하니 목포에서 건의라도 하여 그 준설선을 목포에서 사용해서
목포의 발전을 위하여 얻도록 하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반 金聲浩의원도 오시고 또 유옥우의원도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두척의 준설선 중 1척은 부산에 두고 1척은 군산에 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그다지 필요가 없다.
또 군산은 더구나 조류관계로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체에 우리 목포에 배선 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분의
동의를 있으면 하겠습니다.

◇孫白洙의원

-목포항만 발전에는 무엇보다도 이 준설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도 해무청 유치문제도 목포항만 시설의 발전에 기여
한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 준설선을 유치하므로써 목포항만 발
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시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공회의소, 번영
회가 합심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그러면 재청이 있어서 동의 성립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이 준설선 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상공회의소, 번영회의 세 단체가 합심해서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떠난분이 있습니다.

◇李在洪의원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나 번영회에서 건의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시 의회 자체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까지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議長

- 그러면 우리 의회로서만 건의문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회에서 건의문 보낼 것을 가결을 보아 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번영회에다가 말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가결을 하였으니 당신의 기관에서 거기에 우리와 같이 합심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여 건의 방법을 이렇게 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 단독으로 하여도 좋지만 여러 기관이 협력하므로써 힘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공회의소하고 번영회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합쳐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문을 발송 하자는데 전원 의원의 동의를 수정 정정하여 주십시오.

◇孫白洙의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만 건의문을 발송 하자는 것이지요.

◇林一男의원

-목포 시민들은 누구나 목포는 항구다, 또한 도시로써 해운발 전없이 항구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항의 실정을 본다면 영산강 관계, 그 밖에 여러 가지 관계로 수심이 점점 미어져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최근 간조 때는 배들이 왕래를 잘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삼학도를 조그만 한 배를 타고가도 수심이라는 것이 불과 80cm 밖에 얕습니다.

이와 같이 빨이 많아서 이것을 매일같이 준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 준설하고 있는 준설선은 매일 같이 일을 하여도 3척 정도가 일을 하여야 현재의 수심을 유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률적인 좋은 준설선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체에서 진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건의로서만 끝일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를 중앙에 파견해서 일을 진행시킨 교섭위원까지 파견할 것을 동의에 첨가 합니다.

◇李在洪의원

-요새 각의회에서 건의문이 굉장히 중앙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건의를 하고 교섭위원까지 파견한다면 각 신문에 보도 되면 타 지방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할 것이니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가져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광주를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보니 해무청이 설치는 되었으나 청사도 없고 하는데 사방에서 진정단이 와서 청장에게 진정을 해 썼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무청 설치 운동시 서명 날인한 국회의원이 목포가 120명, 군산 20명, 여수가 물론 몇 10명, 그리고 각지에 몇 10명씩 되어 국회의원 한 사람

이 5개소까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의원이 동의를 하였으니까 이 동의를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해
서 국회의원들을 교섭해서 가져오는 것이 원만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모든 일이 가만히 가서 가져와 지는 것이 있고 큰 소리를 쳐서
가져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문을 발송하고 조용히 하여 큰 소리를 치지 말고 하도록 하고
그 반면 기술적으로 행정부에서 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金昌賢의원

-준설선 관계로 건의를 하자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오전 좌담회에서도 민의원들과 이야기 하였는데 그 분들의 말이나 그 분 비
서들의 말에 의하면 그 때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였으면 하였을 터인데 지
금 시기가 대단히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것이 지연 된다면 그 당시의 10배의 힘이 더 든다고 말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만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동기가 이 건의 정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형식을 갖춘 한 예에 지나
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라도 조속한 심의를 하여 구체적안을 내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정도, 이상적으로 무엇을 강구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일을 합시다.

◇林一男의원

- 물론 李在洪의원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로서는 부산이나 마산에 준설선을 배선 한다는데 그런 지
방에는 수심이 깊어서 그다지 필요치 않다하니 이러한 기회를 타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정부에서도 봉사가 아닌 이상은 목포에 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목포가 제외 된다면 목포 항구는 도저히 항구로써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앞으로 한개의 어촌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직접 건의를 하는 것 보다도 정부에 올라 가므로써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고 목포의 실정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절
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가까운 여수의 예를 보더라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는 모선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하양작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포의 실정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목포의 실정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 시켜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건의만도 좋지만 건의와 아울러 사람을 올려 보내자는 것을 동의에 첨가 합니다.

◇議長

-목포 출신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 목포에 현재 있는 준설선의 200배의 능률을 올리 수 있다.

그것은 무서운 능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준설선을 우리 목포에 주지 않는다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전부 눈먼이만 있다고 지적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건의문도 제출하고 사람도 가자는 것입니다.

◇孫白洙의원

-어제 金聲浩의원의 서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金聲浩의원 마이 내일이나 모래 간다니 건의문을 만들어 두었다가 구분에게 의탁해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議長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찬동 가결)

◇鄭應杓의원

- 지난번 의회 때 교육세를 무수정 통과된 후 지금 시민들에게 고지서가 나간 뒤 부터는 시민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날 그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 때도 특별 부과금이라는 세금은 현재 우리 시민이 도저히 부당하다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 세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대성동 어느 반장집에를 가 봤더니 그 집에서는 그 반 전체치의 고지서가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대로 두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갔다가는 반원에게 몽둥이 마질까 두려워서 도저히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노동자에게 지게를 지어서 힘에 부친 무거운 짐을 지우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같이 우리가 부담할 수 없는 또한 시민들이 그 세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을 부담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형편으로는 시민들이 내지 못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교육세는 바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대부분 시민의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이시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각 가정에서는 각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하여 아주 돈이 곤란한 때이며, 또한 경제가 순환하더라도 지금의 이 춘궁기에 그런 금액을 전 시민에게 부담시켜 놓으니 지금 시민들의 고충은 대단히 심합니다.

또 3월말경에 고지서를 4월 5일자를 납기로 하여 발부하여 놓고 교육청에서는 3월말에 납기라 하여 문턱이 달아 지도록 날마다 받으러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육청 예산으로 말하자면 과년도분의 430만환이나 결손 처분을 하고 변소하나에 60만환이나 든다고 하고 또한 그와 같이 받지 못한 세금을 1,200만환이나 부과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심심한 토의도 없고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의원으로써 시민들에게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하여 낯을 들고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통과된 그 예산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지금 번안 동의를 한다는 것도 아니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니 번안 동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납기를 지금부터 4개월을 연기하여서 8월 15일까지 납기로 하여 교육청에서는 그 기간내에는 독촉장을 내지 말고 8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목포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음)

◇金永完의원

-鄭應杓의원으로부터 교육세 문제에 대해서 목포 실정 그대로

를 말씀해서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2월말까지 국세가 1억 5천만환이 부과되어 있고 또 호별세가 있고 그리고 지금 鄭의원의 말씀과 같이 각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의 입학시기이다.

각 가정에서는 대단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목포시민이 어느 정도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과연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연도초에 세운 것이며, 또한 처음부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도말을 2개월 앞두고 저물어가는 시기를 이용하여 커다란 예산을 세웠는가?

또한 우리 의회 역시 목포시에 이러한 예산을 내놔 가지고 3개월 밖에 남지 않는 연도말에 이것을 통과 하였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징수하다가 나머지 금액은 신년도로 이월하는 것인가?

또한 납기를 8월로 하자

그런데 거기에 원칙적으로 찬성 합니다.

무엇 때문에 찬성하는가 하면 한번 부과된 것은 논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기하느냐 하면 C A C에서 받을 원조 물자가 있으니 그 물자가 오도록까지 당분간 보류하였으며 목재가 오면 그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만약 목재가 8월달이 넘어 가지고도 목포에 오지 않으면 9월까지 연기할 것이며, 만약 6월내로 온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목재가 2, 3개월 내에 온다면 그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재는 대체로 8군단에서 오는데 내가 8군단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은바에 의하면 7월내로는 이 목재가 나올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鄭의원이 8월을 납기로 하자는 것을 재고려하여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李小圭의원

- 간단히 부언 말씀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통과시 본 의원은 해무청 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에 있어서 본 의회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은 갔다와서 들으니 인기주의로 하였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저 - 아가 鄭應杓의원과 金永完의원의 말씀과 같이 귀를 기울일 수 없을 정도로 시의원들이 전체가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표로 통과 시켰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금액을 시민에게 부과하여 살인적인 부과와 살인적인 징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민의 여론이 대단히 높은 이 때입니다.

물론 중앙국민학교 지어야 할 것입니다 만은 시민이 낼 수 있는 부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바와 같이 삼학도 공사를 보더라도 그 때 예산이 통과 되어도 이것이 잘되지 않아서 3년이 지나도 아직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중앙국민학교를 지을 재목이 곧 들어 온다고 합니다 만은 말을 하면 건방진 말 같습니다 만은 금년내로 이 목재가 들어 온다면 본 의원은 할복 자살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내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도말 2개월을 앞두고 1,200만원 이라는 거액을 시민에게 부과해서 전 목포시가 들끓게 하고 있으며, 납기를 5일간으로 하여 징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런 살인적인 부과방법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목적세를 2할 정도를 더 부과해서 내놓은 것이 다행히 통과되어 거저 먹었다는 말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도 거년도 미수가 430만원 그대로 두고 통과하여 시민에게 부과하여 5일내에 징수하려고 하니 시의 호별세는 하나도 안들어 오고 중앙국민학교를 지을 세금만 징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인적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세를 변경까지 해서 번안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중앙국민학교를 짓기 위한 목적세이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8월 15일까지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12월 말일까지 징수하여도 중앙국민학교는 지어질 것이며, 8월 15일까지는 도저히 재목이 안들어 올 것이니 8월 15일까지 절반하고 12월 말까지 절반을 징수한다면 시의원의 입장이나 교육감의 입장이 설 것이니 시장님은 교육감과 상의해서 납기를 연기할 수 있는가? 말씀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 鄭應杓의원과 金永完의원의 말씀과 같이 8월 15일까지 절반하고 12월말까지 절반을 징수 기간으로 하되 나머지는 그 기간에는 독촉장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이대로 가결된다면 본 의원은 교육세가 납부되지 않도록 반대 운동을 전개할 각오입니다.

◇鄭應杓의원

-아까 제가 8월 15일로 연기 하자는 것은 호별세가 9월과 3월에 징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은 신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53(4288)년도 제1기분 호별세가 부과된다.

거기에 수반해서 교육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 15일까지에 1,200만원의 특별부과금의 납기로 하여 전부 징수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목포시민의 담세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절반으로 한다면 지금 중앙국민학교를 짓는데 진안 합니다.

그러나 8월 15일 그대로 두고 합시다.

그래야지 8월 15일까지에 절반으로 한다면 각 국민학교 운영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金京炫의원

- 발언장 소란과 金의원의 취언으로 인하여 속기 불능

◇孫白洙의원

- 지금 金京炫의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당연히 여론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을 얻어 먹고 있는가?

또 3년간의 저는 신입생입니다 만은 의결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과오를 범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3대요소의 하나인 목포의 수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목포의 실정을 본다면 우리 목포는 폐쇄 일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여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아서 안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 25때 부서진 이러한 집들은 다 할 일이지만 내일 할 일이 있고, 오늘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담세력이 없는 목포시민에게 1,200만환이라는 세금을 부과시킴으로써 목포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 때 8대 7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갔더라면 가결이 안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대한 과오를 이 자리를 통하여 사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鄭應杓의원의 말씀과 같이 전체면에 있어서 8월말까지 연기하고 지금 받을 것을 중지하고 독촉세는 8월 후로 받을 것을 동의에 나는 첨가합니다.

◇金永完의원

-이 목적세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의로 현 의장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십시오.

◇李福柱의원

-이 교육세는 어디까지나 교육 자체를 좀 수양시킬 그런 교육세를 우리가 검토하여 통과 하였던 것이며, 지금 여기 1,200만환 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통과 되었는데 그 당시 교육청에서는 200만환이 삭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상정 하였던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교육위원회가 기만적이고 온당치 못한 예산을 시의회에 회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 예산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 자체가 속인 것으로써 온당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에 대해서 교육위원에서 요청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혐의도 하지 않고 통과한 것이 시의회의 온당한 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순이 게재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시의회에 회부하여 가지고 그것이 통과된 것을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통과된 것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의회에서 투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실정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시의회 자체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표시하

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비밀 투표를 누구는 반대, 누구는 찬성하였다는 것을 시민이 다 알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 자체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 동의에 대단히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청 문제를 가기로 더 협의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하나는 호별세, 하나는 교육세, 다시 말하면 목적세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세금을 한 장의 고지서에 박아서 발주하여 놓고 이것을 연도내에 받아야 한다 하는데 우리는 그 기한을 연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를 기왕 통과하여 받아야할 입장에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에게 회부한 것이니 한번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연도내까지 징수하지 않으면 안될 이 목적세 특별 부과금은 납기를 8월까지 연장시켜서 그 기간중에는 독촉장을 내가지고 독촉세를 받지 않도록 또 차압 단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행정부에 요청 하면서 동의에 찬성합니다.

◇金京炫의원

- 제가 지금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세 법에 일반 세금은 그 연도말까지 징수하여야 된다고 하며, 특별 부과금은 그 납기를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특별 부과금이 4월 5일을 납기로 하여 시장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 되었는데 그것은 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고지서를 발부한지 1주일도 못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징수하려 한다면 이것이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市長

-납기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한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서무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고지서를 며칠전에 하등의 연락도 없이 발부 하였는가?

◇庶務課長

-고지서는 3월 말일경에 발부하면서 4월 5일로 한 것입니다.

◇市長

-자치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교육청에서 징수 하도록 하라는 상부의 영대로 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부하고 납기는 적어도 30일간의 기간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청에서 5일간의 납기를 정한 것은 서면이나 구두로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납기에 있어서는 지금 8월 15일이나 12월 말일까지 연기 하자는 말이 있는데 금년에는 연도말이 6월로 되었기에 연장 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독촉장 발부는 연도말 6월 29일까지는 아마 중지하여도 괜찮을까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신년도로 이월 수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시민들이 그만큼 세금은 과중하독 한다니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 하신것과 같이 2부로 분할 징수하는 길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납기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1개월을 법정 납기라고 보는데 목포시의 실정에 따라 30일을 15일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5일이나 15일을 법정 납기에서 주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0일간의 법정 기간을 20일이나 25일로 단축하여도 좋을 것인데 시장에게는 상의도 없이 5일간의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앞으로 시민에게 고충을 주는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특별 부과금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가?

또 한번 통과된 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市長

-특별 부과금을 합법적으로 하여서는 의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청에서 중앙국민학교 증축 문제로 예산을 상정 하였으

니 3개월이나 4, 5개월을 연기 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金昌賢의원

- 지나간 일이 각 의원들께서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들은바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분에게 들었는데 그 분 말에 의하면 집행부에서(이것 교육청을 말한 것입니다) 거반 의회에서는 특별 부과금이 1,200만환이 통과 되었는데 부과 액수를 느려서 1,400만환을 부과 하였다는데 이것 어찌된 것입니까?

기본 액수가 늘은 것인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200만환이 통과 되었으니 1,200만환 그대로 부과 하여야 할 것인데 참 상상외로 우리 의원들을 둘러먹고 있습니다.

즉 왜 말로 「아시매시 이마이」 격으로 너희들 둘러 먹어야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듯이 하고 있는데 이 부과액수에 대한 서무과장의 말씀 있기 바랍니다.

확실한 액수를 말하여 주십시오.

◇庶務課長

-교육세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부담이 많다고 해서 시의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비난이 있다는 것은 저도 대개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은 어디까지나 공평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디서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0만환이 삭감될 것으로 생각 하였는데 무수정 통과 되어서 거저 먹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은 상상치도 않는 일이며, 그런 일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액수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1,400만환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1,300만환을 할당 하였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율이 아닙니다.

◇李在洪의원

- 庶務課長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은 그날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또 논의가 되니까 말하겠는데 사실 지금 학교를 짓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입니까?
그러나 돈을 내라고 하면 누구나 반대할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 시내의 실정을 본다면 고지서를 가지고 날마다 반장집에를 찾아 다니니 아주 귀찮스럽다고 어떤 반장이 그런 말을 저보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예산을 통과 하려면 세부적인 면을 검토해서 기둥 하나에 얼마 들고 또 무엇을 얼마 든다는 것을 심의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 별심의도 않고 무수정 통과하여 놓으니 4월 5일을 납기로 하여 어느 정도 징수 하였는가?
또 거년도에는 75%를 징수 하였는데 이번 1,200만환도 75%를 징수할 수 있는가?
또 지금 1,200만환을 받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징수원은 얼마나 쓰고 있는가?

◇庶務課長

-징수원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200만환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직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5일까지의 100만환 내외 받아졌습니다.

◇明南喆의원

-서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별세 개수는 확정되어 있으며, 호별세 고시저는 이미 나갔는데 1,200만환의 예산은 호별세 개수에 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할 정도를 더 증액해서 부과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찌된 것인가?
지금 호별세의 이의 신청이 400통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전부가 호별세 자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호별세가 삭감되므로써 교육세가 삭감된다는데서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庶務課長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짠 것이 아니다.
기술자들이 중앙국민학교 증축 설계를 한 결과 1,200만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 부과금으로 한 것이다.

◇金永完 의원

-교육청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교육청 예산을 통과할 때 사친회비를 받지 않기로 되었는데 사친회비는 전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민의 여론을 본다면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1955(4288)년도의 연도말이 6월말인데 연도초에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연도말을 2개월 앞두고 갑자기 국회식으로 4사5입식으로 4사5입을 한 것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별세 고지서가 나간 후 교육세 고지서가 나가기 전까지에 이의 신청이 30건 들어왔는데 교육세 고지서가 나간 후 어제까지에 400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1,000통이 들오 올지 100통이 들오 올지 500통이 들어 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이의 신청서를 어떻게 보는가?

목포시민 담세력이 그렇게 있다고 보는가?

그 다음 재목 문제입니다.

아까 李小圭 副議長은 만약 금년도내에 재목이 들어 온다면 할복자살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재목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재목이 들어올 수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庶務課長

-교육청 예산을 연도초에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은 특별 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으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으나 도로부터 전라남도에서 목포가 제일 무능하다고 하며, 상당한 문책을 듣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책의 하나인 의무교육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겠느냐 하여 제2기분 교육세 부과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급히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목 입수에 대해서는 요전번에 교육감께서 언급 하였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교육세는 문화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세에 수반해서 내는 것이 교육세의 율이 불충분 하다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여 할당된 것이며,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저로서 답변하기가 외람합니다.

※장내 소란

◇鄭應杓의원

- 교육세의 납기를 8월 17일까지 연장 한자는 저의 긴급동의를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에 일반 교육세는 연도말까지 기여이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육세가 8월 15일까지 연기 된다면 일반 교육에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특별 부과금에 대해서 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말이 6월말로 되어 있으니 이 특별 부과금은 연도말까지는 목포 시장께서 전 시민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6월말까지의 미납자에게 내되 조월 수속을 그 다음 달에 받도록 하였던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납기를 연장 하는데는 교육감과 시장에게 교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 교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교육 특별 부과금 납기조절 교섭위원회를 본 의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시장에게 교섭하고 교육감에게 조월 수속을 하고 공사 관계도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런 조치를 취해서 6월 29일까지는 독촉장을 내지 말 것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6월말까지 하였으면 공사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회의 교섭위원은 의장과 각 분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음)

◇議長

-지금 鄭應杓의원의 긴급 동의 대단히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부담력이 지극히 과중 합니다.

지금 광주와 목포를 비교한다면 광주에 1기분 교육세가 1,100만원이고 2기분이 1,065만원인데 이것을 통틀어 말씀 한다면 2,165만원이라는 교육세가 부과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는 그만큼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민은 그만큼 담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金昌賢의원

- 지금 중앙국민학교 옆에 있는 대지에 100여 세대가 사는데 그 대지를 교육청에서 입찰불하 받았는데 그 불하 관계가 당연히 주민에게 낙찰이 되어야 할텐데 교육청에서 받게 된 것은 조정 가격의 몇십배를 더 주고 받았는데 그 금액은 어디서 사용 하였는가?

그럼 거년도 예산 통과시 절대로 미수를 안겠다고 말하였는데 430만원이 미수액을 낸 것은 어찌된 것인가?

그리고 아까 1,200만원이 통과 되었는데 1,230만원이 절대로 많지는 않는데 이것은 또 어찌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庶務課長

-중앙국민학교 옆 귀속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그 귀속재산 입찰시용찰 결과 일부는 교육청에 낙찰되고 일부는 연고자에게 낙찰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정가격의 수십배를 주었다고 말씀 하였는데 그것은 평당 1,100환씩으로 하여 낙찰되었는데 최저 가격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가격 이상이 연고자에게 낙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중앙국민학교 토지 구입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였는데 그 당시에 거년도 2년분 즉 4기분이 시에서 우리에게 넘겨줄 때 되도록 미수없이 하겠다는 것이지 미수가 하나도 없이 하겠다는 말은 한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로 남아 있는 것이 현재 목포에 거주하지 않는 자이며, 거주자에 대해서는 차압 처분을 단행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김문옥씨집만 차압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것은 집옆에 토지를 학교부지로 하기 위하여 미수로 있는 것입니다.

◇議長

- 鄭應杓의원의 긴급 동의에 대해서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거수 찬동 가결)

그리고 아까 鄭應杓의원께서 긴급 동의를 나는 그 앞에 문제에 관련이 있는 줄 알고 가결 선포도 하지 않았는데 鄭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여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설선을 목포로 가져오는데 있어서 이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되었으니 이제는 또 그와 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상업은행이라는 것을 최근 광주에서는 유치하여다가 개점한 모양인데 우리 목포에서도 상업은행의 유치 운동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도 주선 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하자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1시 10분이니 오후 1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중 식)

(오 후)

◇議長

-그러면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2시입니다.

상업은행이라는 것이 광주에 유치되어 지금 현재 개점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의원 金聲浩氏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포에 상업은행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며, 지금 시장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문이라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었다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상업은행 하나를 더 가져 왔으면?

◇金三星의원

-어제 저도 좌담회 참석하여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하나라도 더 많으므로서 목포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경비를 써서 서울에 올라가서 유치 운동을 한
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해무청 관계로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런 기회를 이용해서 상업은행 목포지점을 설치 한다는 것을 건의하기 위하
여 사무 당국에서 그런 기회에 올라가는 시의원 편이나 적의한 편에 진정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써 건의할 것을 저로서는 동의 합니다.

(재청하는 이 있음)

◇議長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타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거수 찬동 가결)

그러면 부의 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金三星의원

-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주동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정세인
데 이번에 마침 13등으로 불할해 가지고 50환이상 359환까지를 정하였는데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별세 등급은 49등까지 있는데 이것은 350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법인세의 동정세에 있어
서는 하등의 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 100만환 이상을 부담하는 법인세에 대한 동정세가 1, 2기분을 하
지 않고 종전과 같은 부담을 한다면 개인별 동정세가 있고 법인세도 동정세
가 있다면 커다란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받치는 납세 의무자가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 우리가 3년동안 의회 생활을 하면서 더욱이 의회 초창기에

우리가 회의 규칙을 제정하여 놓고 우리가 이행치 않는 사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회의 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토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행정부 대 질의안이 있으면 반드시 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질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후로는 議長님이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 무지한 가뭄으로 인하여 지금 전 시민 뿐만 아니라 이 춘궁기에 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 대한 시민 생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등을 알기 위하여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 대 질문을 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음)

◇議長

- 鄭應杓의원의 긴급 동의에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2표, 가결

◇金三星의원

-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 답변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법인체에 대해 가지고 받게된 동정세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동정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 호별세만이 부과한 것을 법인체에 대해서 부과 하게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개할적으로 말씀 한다면 법인 단체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동행정에 편리를 제공하고 동행정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하니까 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세에 대한 것은 그 금액을 그대로 시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金三星의원

-자연인에는 350환으로 감되었는데 법인체에 대해서 이것을 적

용하지 않고 원법 그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커다란 모순이 게재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체에 대한 동정세를 똑같은 법으로써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總務課長

-동정세를 직세로 본다면 역시 호별세 할로 부과 되는데 법인체 할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호별세율은 자연인에 대해서 만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법인체에 대해서는 이 것이 수시로 조정이 된다.

그래서 1년간 대개 5, 60만원이 규정 되는데 이것 역시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체 할은 1기, 2기가 아니라 그 법인 단체 사업 년도에 의해서 부과되며, 대체로 6개월이나 1년이나 3개월로 됩니다.

지금 나간 것이 1년분인 법인 단체도 있고 6개월분이 단체도 있습니다.

◇金永完의원

-1954(4287)년도 제2기분 동정세 부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표를 본다면 부표 제2호 용당동, 산정3구동, 죽교5구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은 요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21만 9,795환의 보조를 어디서 보조하는 것인가?

◇書記 朴贊圭

-1953(4286)년도 제2기분 채무 확정액을 시에서 수입하여 보조를 하여야 할 것인데 내놓을 동에서 전부 써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받으면 보조할 수 있습니다.

◇林一男의원

-여러가지로 자치제 동운영 문제를 위요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또한 이것을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의하면 부표 제1호를 보면 호별세 등급과 동정세 등급의 차이가 너무 적습니다.

즉 부표 제1호에 의하면 동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동정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결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내포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호별세 등급은 4등 내지 6등자리가 그다지 과중하지 않는데 동정세 등급은 1년의 부과금이 1개월에 50환, 12등급이 350환인데 이렇게 되면 1등과 13등까지의 차가 7배인데 호별세는 4등이 225환, 49등이 23,260환으로 되며, 약 100배의 차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 동정세는 부유층을 감해서 세공민층에 부담시키는 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總務課長

-지금 우리가 13등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렇게 되었으나 이것이 차차 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잘 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제1호 부표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윤곽을 짜 놓은 것이며, 원칙적으로 그 동의 동정은 그 동에서 염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사친회비의 예를 들어 가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음

※ 장내 소란

◇林一男의원

- 자치적으로 운영할 것을 연구 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대한민국의 한 도시가 또 법치국가가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서 모순된 길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정세 부과율을 본다면 부유층에서 많이 받아다 세민층으로 보조하지 않고 세공민층을 뜯어다가 부유층에 붙여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에 많이 물리면 다소의 차액이 있을 것이니 그 차액을 세공민층에 물리면 좀 나올 것인데 호별세 등급이 몇 등급이 되던지 13등으로써 호별세는 100배차가 있는데 동정세 등급은 7배 밖에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그런 모순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總務課長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산 부족의 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하여야 하는데 그 보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음

※ 장내 소란으로 속기 불능

◇金南鎭의원

- 방금 林一男의원으로부터 동자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을 감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였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동에서 부동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總務課長께서 동 자치운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참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 다음 부표에 나타난 채무액의 청산 방법과 이것을 청산하므로써 자치동종을 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장내 소란으로 속기 불능

◇明南喆의원

- 金南鎭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만은 현재 5개동에 과도액이 53만 6,763환을 회수하여야 되겠는데 이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金南鎭의원의 말씀과 같이 채무 확정액을 금년 연도말까지 청산하여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회수액 53만 6천환 이것은 회수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다른 동에서는 바빠서 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작년 8월, 9월, 10월까지 전부 끝지었습니다.

그리고 얻어쓴 동은 많이 있으니까 이 놈을 받아서 시에서 잔 돈 동에게 줄 것입니다.

이 회수할 금액을 쓴 동들은 자기 동에서 받아서 시에 내지 않고 우선 자기

들이 3월까지의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기분을 받으면 회수 됩니다.

그리고 타시의 예를 본다면 매년 일반 예산에서 동정세 보조금을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5월 중순에 추가예산에서 청산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되는대로 하고 신년도로 조월 하겠습니다.

◇明南喆의원

- 270만환의 부채를 금년도 말까지는 청산해야 할 것이며, 1955(4286)년도 부터는 매년 500만환이라는 금액이 일반 회계에서 동에 보조를 하고도 일반 회계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세입 자원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市長

-지금 동행정이 2, 3년 전부터 부채를 정리 못한 까닭으로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일반회계 자체도 대단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 4월의 물가에 의해서 짜진 것인데 실지는 물가가 작년 4월의 3.45배가 전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희망하고 있는 것은 영업세 2기분이 금년도 5월이 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된다면 작년 4월에 물가 평균으로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달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포 뿐만 아니라 도 각 시가 다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동정세를 그 동치만 가지고 부족한 동은 신년도에는 부득기한 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동에서 될 수 있으면 그 동 자금자족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에 있어서는 5월에 영업세를 받아서 보충하고 또 일반 제세

수입에 있어서 가지고는 1953(4286)년분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은 신년도로 조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정세 등급에 있어서는 이것이 시험 삼아서 한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순조롭게 된 것입니다.

◇金京炫의원

- 저는 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세부적인 면까지 말을 앓더라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市長이나 副市長이나 議長이나 係長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무적으로 할 수 없는 일 또는 잘못 되는 일을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 행정 사무까지 질문을 한다면 도저히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논의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金三星의원

-방금 여러 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자치 행정 문제는 이상으로써 토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또한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청에서 민의원을 모시고 해무청 관계로 토의하고 목포시가 쇠퇴일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토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목포시민의 담세력은 부족한데 과중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의 실정을 본다면 국세가 광주에 비교해서 광주가 100인데 목포가 54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가 한 사람이 640환이면 목포가 579환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영업자들이 광주나 서울, 부산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의 실정을 본다면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못내

고 채납처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은 목포불인견(目下不忍見)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4차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세사람이 광주사세청을 방문하여 목포의 실정을 호소 하였더니 사세청 당국에서 말하기를 이런 일이 이리에서 한번 있고 목포에서 3차에 걸쳐 이러한 진정이 있으니 하여간 목포는 담세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라도 해결해서 목포 발전에 기여 하려면 우리시 의원 21명 전부가 사세청을 방문해서 이 실정을 호소하여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세무서와 목포세무서를 비교하여 보면 100대 54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21명 시의원이 말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시 의회가 창립 3개 성상을 보내 갑니다.

그런데 시민의 원성하는 말이 자칫하면 죽는다 하더니 이제 자치법을 실시 하니까 우리 시민은 다 죽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를 맞이하여 기념식을 하기 위하여 사무 당국에서는 결정적인 기념식을 하기 위하여 6만원 정도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은 기념식을 간단히 7시부터 9시까지 식을 거행하고 21명 전부가 광주에 가서 호소해서 그날 경비가 2만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는 모르나 우리가 광주에서 효과를 거둔다면 2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라도 진정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金南鎭의원

-방금 金三星의원께서 그야말로 진심으로 시민을 아끼는 마음에 나온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만은 우선 방금 동행정 문제를 鄭應杓의원의 동의로써 상정되어 논의중입니다.

그리고 이 동 행정도 3, 4년간 동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논의해 가지고 결정 하였다가는 지금 우리가 교육세에 대해서 시민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잘 생각하여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도중 기록 불능

◇李福柱의원

- 지금 질문 도중에 회의 규칙이 나와서 동행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 행정부 대 질의로 들어 갔는데 이 문제가 1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토의를 그만하고 오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제로 들어 가도록 합시다.

◇林一男의원

-회의 규칙에 의해서 鄭應杓의원의 긴급 동의로 대 행정부 질의를 하자고 하여 이것이 가결되어 지금 질의 도중입니다.

※ 장내 소란

◇鄭應杓의원

- 우리가 3년전부터 동행정에 대해서 논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천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다면 부동과 빈동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토의 한다면 오늘 끝나지 못합니다.

또 내일 동장 회의에 내놓아야 할 터인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 회의를 월요일날 하더라도 시간 여유를 주어서 시의회에서 전문분과 위원을 내 가지고 이것을 신중한 토의를 해 가지고 동장회의에서 지시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분과 위원 5명 지명할 것을 의장에게 일임하고 이 위원회를 지명할 것을 동의 합니다.

지명 하는데는 빈의원과 부의원을 지명 하십시오.

(재청 하는 이 있음)

※ 장내 소란

◇金昌賢의원

- 저도 어제 오후 1시에 동 행정문제를 토의 하는데 참석 하였는데 최하 50환을 30환으로 한다면 적자가 많다는 것으로 행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장내 소란

◇議長

- 鄭應杓의원의 동의에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거수 찬동 가결)

◇明南喆의원

- 5명 분과위원을 선정하는데는 각 의원들의 출신 분포를 보아서 지명 하십시오.

◇議長

-5명 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鄭應杓의원, 金南鎭의원, 金永完의원, 金昌賢의원, 孫白洙의원

※ 장내 소란

◇鄭應杓의원

- 지금 춘궁기로 말미암아 세민층과 절량 농가가 나오고 있는 이 때 시에서는 세민에게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세민 배급이 4말 8되씩 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쌀을 거번 방출미대 미납자에게 배급을 하여 그 당시 받지 못한 방출미대를 징수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그 방출미대 미납자가 이주 관계로 징수 불능하여 그것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1호당 800환이라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극세민이 못타고 좀 나은 사람이 타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방출미대를 받기 위한 배급인가?
세민을 위한 배급인지? 제가 본바 느낀바입니다.
또 하나는 건설과장에게 묻고 싶은데 지금 시내에는 여러 가지 억측이 구구합니다.
이것은 요새 날이 가물어서 대단히 식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앞으로 5, 6일 먹을 물밖에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가 아니오면 어떠한 인의적, 인공적으로라도 목포에 물이 최후까지 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민이 그대로 물을 못 먹고 죽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하여 주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일반 시민에게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金永完의원

-議長! 언제든지 우리가 회의 규칙은 절대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까 金三星의원의 동의하여 토의를 종결 동의 하였으니 회의 순서대로 하여주기 바랍니다.

◇金京炫의원

- 이 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이 비를 주어야 하지 시장이나 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며, 책임이 없는 것을 물은다면 갑갑한 일이 아닙니까?
이 물을 누가 목포시민에게 안주고 싶을 것입니까?

※ 장내 소란

◇議長

-金三星 의원의 긴급 동의에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거수 찬동 가결)

◇李福柱의원

- 여러 가지로 행정부 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지난 한 형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문제인 목포시 도로정비 조례 제정의 건, 목포시 공익 전당포 기채의 건이 이 두가지를 초 단시간에 결정을 짓고 대 행정부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오후 4시 1분 전 議長, 副議長과 사회를 교체

◇金永完의원

- 李福柱의원은 저 부의안건을 단시간내에 해결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안건 전에 鄭應杓의원의 동의로서 질문중입니다. 그러니 수도 문제에 대해서

※ 장내 소란

◇副議長

-아직 열두분입니다.

金永完의원이 建設課長에게 묻습니다.

제35회 때 이 수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중앙에 얼마나 대책을 강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가?

답변을 요망합니다.

◇建設課長

-지금 현재 물이 총체적으로 31만4천톤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7할을 담당하고 있는 달산리 것이 오늘 현재 7만7천6백톤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달산리서 3천톤씩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일간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선리 양수장은 오늘부터 공사 착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수장에서 1일 천톤씩 올라와서 달산리에서 3천톤 내는 것은 2천

톤씩 내면 25일분을 35일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4수원지 물은 31만4천톤이 있는데 이것은 목포시민이 100일 먹을 수 있으며, 목포에 완전히 물이 끝일 날은 62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서류를 제출하여 놓았다.

그리고 비가 끝내 오지 않으면 "매이스" 라는 미국인이 월선리 저수지 밑에 지하를 파면 물이 있다 하였으니 천계천이 끊되면 왜정 때 잡아 놓은 예비지와 이 지하를 착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金永完의원

- 그러면 아직 중앙 요로에 천계천 공사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한 일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천계천 공사비로 76억3천만원은 진작 냈습니다.

◇市長

- "매이스" 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발견하여 놓고 갔는데 거기의 실정을 보니까 그 밑에 1,000여 두락의 논이 여기서 물을 내개 된다면 도저히 벌어들일 가망이 없게 되니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당시 "매이스" 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남의 나라에 10년이나 있게 된다면 이 천계천 수원지를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도 불가능하니 왜정 때 예비지나 어떻게 할까 하여 중앙에 서류를 제출하여 놓았으며, 시내 송수관이 녹이 나 있으니 이것도 대부분은 고쳐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국장이 양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産業課長

-대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실지가 상당한 대역 미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당국과 심계원의 조목거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출미대도 받아서 당국에 청산할까 하여 공식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으나 그런 말은 몇 몇 동장에게 하였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말은 쓰지 못함

◇鄭應杓의원

-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상으로 행정부 대 질문을 종결하고 부의안건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음)

◇副議長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거수 찬동 가결

◇金子洪의원

-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 때문에 극히 곤란이니 제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산리 수원지에 7천톤이 있다는데 제 경험으로 보아서 이것을 1할 정도는 남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전부 빼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방이 바짝 마르는데다가 강우가 200밀리나 300밀리가 온다치면 제방이 버글버글해서 무너지는 일이 있으니 물을 다 빼먹지 말고 항상 1할 정도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明南喆의원

- 앞으로 20여일내 먹을 물이 있으니까 그 안에 비가 오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市長이나 建設課長이

※ 장내 소란

◇建設課長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 전부 빼먹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전부 빼먹는다 하더라도 물 넣을 때 주의 해서 넣으면 됩니다.

◇副議長

-부의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 토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林二男의원

- 먼저 본 조례의 제안자인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建設課長

-축조 설명이 있었음

◇明南喆의원

- 이 조례의 제4조를 보면 도로의 정기 수선시는 1세대당 4명, 임시 수선시는 1세대당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역을 한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을 깎다면 돌을 어디서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建設課長

-지금 목포에 국도, 시도를 물론하고 포장 도로를 제외하고 1세대당 3미터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75,490만미터입니다.

※ 장내 소란

※ 의원들의 퇴장으로 성원 미달이어서 대단히 소란 하였음

◇市長

-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촌같으면 삽이나 무슨 연장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정비비의 할당이 나갈 것입니다.

◇金南鎭의원

- 대체 토론하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1, 2, 3독회를 전부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金昌賢의원

-제5조를 낭독 후 우마차, 자동차 업자들이 일반 세대의 3배면 너무 적다.

◇建設課長

-그 사람들은 도로 손상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다.

◇林一男의원

-지금 조례를 보면 5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부역을 과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가족수에는 제한이 없는가?
한 사람 사는 세대나 두 사람 사는 집은 곤란한데 여기는 어떻게 구분할 것
인가?

※ 장내 소란으로 金吉煥의원, 建設課長, 孫白洙의원 발언 속기 불능

◇孫白洙의원

-1세대당 4인이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깎아서 변경할 수 없는가?
정기 수선시의 4명을 3인으로, 임시 수선시 3인을 2인으로 할 수 없는가?

◇林一男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우마차 소유자가 1대 가진 사람이나
10대 가진 사람이나 3배의 12명으로 하면 불공평 하지 않는가?
이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장내 소란

◇市長

-우마차, 자동차는 1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金昌賢의원

-여기 조문에는 정기 수선은 매세대당 4인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가족별로 구분해서 가족 5인 이하는 2인, 5인 이상은 3인으로 하고 임시 수선시는 2명으로 하고 우마차 3배로 한 것을 1대 이상은 5배로 해서 수정 했으면 하겠습니까?

개의 합니다.

◇林一男의원

-조례를 심의 하는데 있어서 회의규칙으로 본다면 1독회, 2, 3독회로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써 1독회를 끝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 합니다.
(찬성 하는 이 있음)

◇副議長

-이것을 축조심의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제12조부터 하겠습니까.
제1조 이의 없으면 통과 합니다.
제2조도 이의 없으면 통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3조도 통과 할까요?

◇明南喆의원

-여기에 춘추를 넣지 않으면 안되는가?

◇建設課長

-이것은 정기적이면 전국적으로 춘추로 되어있다.

◇副議長

-문제는 제4조입니다.

원인은 4인을 3인으로 3인을 2인으로 줄이자.

또 가족이 5인 이상은 3인으로 5인 이하는 2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金昌賢의원

- 동의에 참가 합니다.

◇孫白洙의원

-받아 드리겠습니다.

◇金子洪의원

- 주리자는 것은 좋다.

그러나 목포시의 도로 실정에 비추어 시민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도로를 본다면 억만 진창입니다.

그러니 도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음)

◇金昌賢의원

-이것의 인원을 다시 주려서 하나나 둘의 차이가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林一男의원

-金南鎭의원이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 동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1독회를 끝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서 축조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

-아까 金南鎭의원원의 동의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 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 하겠습니다.

가 8표로 가결

※ 사회를 副議長 議長과 교체

◇議長

-다음 목포시 공익 전당포 기체에 관한 건입니다.

◇明南喆의원

- 설명 들을것도 없이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3청, 4청까지 있음)

◇議長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8표로 가결

※ 장내 소란

◇議長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폐회 하겠습니다.